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86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김상욱·조은희·이달희

서범수 · 조지연 · 김선교

정동만 • 백종헌 • 박준태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방문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거나 지역별 서비스편차·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가족 유형별로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범운영을통해 통합센터 운영을 유도하고, 2021년 통합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 ·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급격한 인

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별 맞춤형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운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기적인센터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5조제7항).
- 나.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35조의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등 시설 평가 업무를 명시함(안 제34조의2).

법률 제 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 12.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에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3(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
	승)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4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1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가
관한 중요 사항	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u><신 설></u>	12.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u>관한 중요 사항</u>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
	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등을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u> <신 설></u>	제35조의3(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기 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한다.